

#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ing the Designation System of Institution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이영호(Youngho Yi)<sup>1</sup>, 이성숙(Sungsook Lee)<sup>2</sup>

E-mail: na20ho@gmail.com, infolee@cnu.ac.kr



1 제1저자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학과 석사과정  
2 교신저자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논문접수 2025.01.14  
최초심사 2025.01.20  
게재확정 2025.02.06

ORCID

Youngho Yi  
https://orcid.org/0009-0008-8793-8902

Sungsook Lee  
https://orcid.org/0000-0003-0897-4697

###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이 논문은 이영호의 충남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석사학위논문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2025)를 축약, 수정, 보완한 것임.

### 초 록

공공기관 중에서 기록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기록원이 직접 관리하는 기관들이 있다.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은 2007년, 2009년, 2012년에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지정되었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과 자체관리기관의 2017~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의 성과가 더 좋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제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지정 기준의 정비와 제도의 정례적 운영, 경영평가와의 연계, 기록경영시스템 표준(ISO 30301)의 도입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ABSTRACT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K) provides comprehensive records management oversight to designated public institutions, a framework established through multiple designation phases in 2007, 2009, and 2012. These institutional designations, determined by varying criteria, have remained unchanged since implement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challenges within the NAK supervision designation system and proposed strategic enhancements to its operational framework. The research methodology incorporates qualitative interviews with records managers from public institutions to gather operational insights.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spanning 2017-2021 demonstr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superior performance among NAK-supervised institutions than self-managed entities. Drawing from these findings,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the strategic expansion of NAK's institutional supervision framework. The proposed enhancement measures encompass four key dimensions: reformulation of designation criteria, implementation of systematic operational protocols, integration with management evaluation frameworks, and adoption of ISO 30301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Management Systems for Records - Requirements.

Keywords: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기준, 공공기관, 경영평가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K-Supervised Institutions,  
Designation Criteria,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https://jksarm.koar.kr

# 1. 서론

## 1.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999년 1월 29일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공공기관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5709호, 시행 2000. 1. 1.)」이 제정되었다. 현재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그 목적은 최초에 제정된 취지와 같이 제1조(목적)에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라고 유지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그간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 기록관리가 잘 되면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조직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제도를 설명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기록관리는 필요한 것이고 잘해야 한다.’라는 의식을 내재화하고자 하였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제외하고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실무자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설문원 외(2018)는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은 환경에서 하향식 제도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사건과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기록전문직 집단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제도 미비’와 ‘전문성 부족’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국가기록원에서는 계간지 기록인(임근혜, 2011)을 통해 이미 2011년부터 기록관리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 오면서 공공기관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기록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는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전담인력이 없고,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높지 않기 때문이며, 받은 정부기관이면서 받은 기업인 공공기관은 정부의 기능 일부를 위탁받아 집행하거나, 기금을 관리하는 조직도 있지만 공기업, 은행 등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조직 여건 속에서 기록관리와 같은 지속성을 가지는 업무는 사소한 일로 치부되어 조직 내부에서 소외받기 쉬운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하였다.

관련 법률이 시행된 지 25년이 지난 현재의 공공부문 기록관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기록관리를 위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했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는 대상 1,633기관 중 1,047기관이 이행하여 64.1% 수준이고, 총 1,188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만 놓고 보면 총 346개 기관 중 238개 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약 68.8%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인 공기업은 32개 기관 중 30개 기관에 전문요원이 배치되었고, 준정부기관은 55개 기관 중 53개 기관에 배치되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율은 95.4% 수준으로 그동안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 조직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의 관리는 당연히 국가에서 관리한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관들에서 생산하는 각종 기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느 수준까지 개입해 관리 또는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중에서 일부를 선정하여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좀 더 면밀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등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현재에 이르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기관의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의견 조사를 진행하였다. 기관이 속한 상황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과 자체관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두 그룹 간 경영성과의 차이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수준의 차이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 1.2 연구방법과 내용

### 1.2.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인식 조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중 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2024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각종 법령, 부처별 고시, 국가기록원 발간 자료 등을 검토하여 제도적 배경과 운영 사항 등을 조사하였으며, 인터뷰를 위한 대상기관 선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후에는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여 적절성 등에 대해 파일럿 테스트 참가자의 검토를 받았다. 인터뷰를 통해 기관별 상황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의 연령은 30~40대였으며, 평균 7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준비된 질문지는 인터뷰 진행 일주일 전에 개인별 메일로 송부하여 사전에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으며, 인터뷰는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제도에 대한 현장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전반적인 생각과 개선 방향 등을 청취하였다.

### 1.2.2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분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받게 된다.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는 공공기관 총 40개 중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평가를 받는 기관은 총 30개이다. 이 기관들은 2012년 이후 기관 통합, 기관 명칭 변경 등의 변화를 제외하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기획재정부 주관 경영평가 결과는 매년 6월에 발표되며, 공식적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된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는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홈페이지에 기관별 세부 결과를 게시하고 있다. 연도별 결과를 기관별, 유형별로 정리하여 표로 작성하였고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과 자체관리기관들의 경영평가 결과를 통계프로그램 “R”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 1.3 선행연구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논문은 거의 없었다. 다만,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거나, 공공기관 기록관리와 경영성과를 연계해서 연구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 먼저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중 공기업의 기록관리를 연구한 논문으로 김지현(2013)은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인터뷰하여 해당 기관들의 기록관리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관 내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국가기록원의 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논문이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중 공기업에 대한 기록관리 업무 상황을 분석하였다면, 같은 해에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의 기록정보서비스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한 논문이 있었다. 김영남(2013)은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기록정보서비스 인프라 및 이용영역, 정보공개서비스와 기록정보서비스 영역을 각각 설문조사 후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 보존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연구한 논문으로 김혜정(2017)은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 보존관련 내외부 인프라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와 경영성과를 연계해서 진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기록관리와 경영활동 간의 실제적 상관성을 분석한 논문으로 정기애와 김유승(2009)은 기록관리와 경영성과의 대표적인 정의와 개념을 중심으로 말씀 불드리지 모델에서의 기록관리 영역과 ISO 15489의 경영품질 요소를 연계 분석하여 상호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 중 상대적으로 기업성을 더 많이 보유하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기록경영 도입을 연구한 논문으로 박용기와 정연경(2016)은 수익성이 높게 나타난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과 기술적 통계분석 등을 통해 기록경영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필요한 요건을 제안하였다.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수검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에 대해 연구한 논문으로 최동운과 최윤진(2022)은 매년 작성되는 경영실적 보고서상에 기재된 기록관리 부분이 윤리경영과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면서 기관의 투명성과 윤리경영 제고를 위해 기록관리에 대한 전사적 전략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수반되어야 하는 투명성과 정보공개제도가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지 연구한 논문으로 이현영과 정연경(2017)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보공개제도 운영평가 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평가를 연계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입증하였다. 기관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성과평가에 기반하여 연구한 논문으로 박성재(2017)는 기록관의 평가지표, 서비스 평가지표와 사회적 영향을 바탕으로 논리모형을 만들고 사회적 영향평가 모형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영역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국가기록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반적인 영역에 따라 연구하고 개선점을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으며, 각 기관에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경영성과 수준, 윤리경영, 투명성과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제도 자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거나, 두 가지 분야의 연구를 통합하여 논의를 진행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장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최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 2.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 제도와 경영성과

### 2.1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 제도

#### 2.1.1 국가기록원의 공공기관 대상 직접관리기관 지정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하고 있는데, 제3조(정의) 제1호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公共)”이라는 범위가 워낙 형태가 복잡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해 놓은 상태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를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현황 (※ 서울·경남·청주기록원 관한 공공기관 제외)

총계	1호(기획재정부 고시 기관)			2호 (지방공사·공단)	3호 (지방자치단체 조례 +출자·출연기관)	4호 (특수법인)
	소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632	327	87	240	114	17	174

이들 중 직접관리기관이라 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호의 기관 중 시행령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제42조(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협의·확정), 제27조(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의 의무가 부여되는 기관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국가기록원에서 발간한 『2018년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과 『2019년 정부산하공공기관 및 대학 기록관리 중점 추진사항』에 따르면 직접관리기관 지정기준을 아래의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배포된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2024)』에는 이러한 기준이 사라지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

<표 2>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기준

연도	정성기준(1차)	정량기준(2차)	
		기관존속기간	정원
2009	설립 목적 및 수행 업무	10년 이상(1999년 이전 설립)	500명 이상
2012	기록관리 수행 가능성	10년 이상	100명 이상

※ 2007년 지정 기준 : 정부투자기관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은 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2007년에 16개 기관을 최초로 지정하였고, 2009년에 10개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2012년에 14개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총 40개 기관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 현황

지정시기(연도)	기관명
200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투자공사 (이상 16개)
2009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상 10개)
2012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연구원, 대한적십자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 14개)

이 기관들은 앞서 열거한 의무들 이외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에서 주관하는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정기적으로 수검하게 된다. 평가의 목적은 기록관리평가를 통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 강화 및 체계 정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속하지 않은 기관들보다는 오랫동안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1.2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여부에 따른 법정 의무사항

국가기록원에서 직접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다음과 같은 의무가 부여된다. 첫 번째, 기록물 생산현황 관리 및 통보 의무를 진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에 따라 기록관은 처리과의 생산현황 통보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생산현황 통보 계획을 수립한 후 생산현황 통보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한다. 각 처리과의 생산현황을 접수 및 검수한 후 취합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두 번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등)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협의·확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상의 신설 또는 변경된 단위과제에 대해 매년 10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록관리기준표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분석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 평가)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평가의 목적은 공공기관 기록관리 역량강화 및 개선유도이며,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은 포상을 추진하고, 미흡한 기관은 컨설팅이나 교육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별도의 실태점검 등을 실시한다.

### 2.1.3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국가기록원 직접관리 필요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의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하다. 정부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일부는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에서 직접관리하는 기관의 숫자는 40개 기관에 불과하고 기획재정부의 지정에 따라 관리를 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면 30개 기관에 그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업무를 직접관리한다는 것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가기록원에서 직접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은 그만큼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또는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직접관리하는 기관들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관들의 업무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은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지 않고 있다. 4개 과학기술원 중 유일하게 한국과학기술원만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으며,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은 그렇지 않다.

한국철도공사는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지만, 수서역을 중심으로 SRT를 운행하고 있는 공기업인 에스알은 그렇지 않다. 가장 마지막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이 있었던 2012년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아도 1차 기준인 기록관리 수행 가능성, 2차 기준인 기관 존속기간 10년 이상과 정원 100명 이상을 놓고 적용해 보았을 때 적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기록원에서 직접관리하는 한국마사회와 예금보험공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강원랜드와 무역보험공사 등 같은 공공기관 범주 안에서도 직접관리기관 지정 기준에 대한 모호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기관들의 업무가 과연 한쪽은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아야 할 만큼 중요하고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적용한 1차 정성기준인 ‘설립 목적 및 수행 업무’, ‘기록 관리 수행 가능성’이라는

다소 주관적인 기준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한다.

## 2.2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와 경영성과

### 2.2.1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와 기관 운영의 투명성

공공기관은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고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공사업, 대국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기관에 버금가는 중요한 기록물을 생산하고 있다. 경제개발 촉진, 독점사업 통제, 공공수요 충족, 역사적 유산관리 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중심축으로서의 역사적·보존적 가치를 내재한 기록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공공기록물법에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경우 국가기록원의 지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하는 규정은 공공기관 주요 기록물을 보다 철저히 국가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려는 조치이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는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윤리적인 책임이자 의무이다. 공공기관의 주요 기록이 잘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스스로 관련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기관 내 기록관리 인식 확산을 위해서 개별 직원들의 기록관리 역량 강화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 2.2.2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제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제도는 1983년 도입 이후 40여 년간 평가대상, 평가지표체계, 평가방식과 활용 등에서 확대와 변화를 거듭해 왔다.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공공기관 관리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으며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성과측정을 통해 어떻게 결과를 개선하는지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같은 법 제48조(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유형분류와 그에 따른 지정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자체수입비율, 자산규모, 총수입액, 직원정원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다.

<표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유형분류 기준

구분	지정요건(원칙)
① 공기업	○ 자체수입비율 ≥ 50%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85% 이상), 직원정원 ≥ 300인, 총수입액 ≥ 200억, 자산 ≥ 30억
▪ 시장형	▪ 자체수입비율 ≥ 85%, 자산 ≥ 2조
▪ 준시장형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② 준정부기관	○ 자체수입비율 < 50% (기금관리형은 < 85%), 직원정원 ≥ 300인, 총수입액 ≥ 200억, 자산 ≥ 30억
▪ 기금관리형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
▪ 위탁집행형	▪ 기금관리형이 아닌 준정부기관
③ 기타공공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 연구개발목적기관	▪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경영평가의 지표 체계는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로 구분되어 있다. 경영관리 범주의 주요 평가내용은 기관의 지배구조 및 리더십, 안전 및 책임경영, 재무성과관리,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주요사업 범주는 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중 기록관리 분야는 지배구조 및 리더십 분야의 윤리경영 지표에 세부평가내용의 착안사항 중 일부로 들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요 기록물 분류체계 마련 등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기재되어 있다. 윤리경영 지표는 배점이 크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기관의 평가 결과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기관의 평가결과는 유형별로, 각각 6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수준은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40개 중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받는 기관은 총 30개이다. 이 기관들은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수검한다. 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 매년 경영실적평가도 수검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사항을 정리하면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평가등급별 수준

평가등급	수준정의
탁월(S)	모든 경영 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우수(A)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양호(B)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양호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보통(C)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미흡(D)	일부 경영 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아주미흡(E)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수준

<표 6> 국가기록원과 기획재정부의 관리를 모두 받는 기관 현황

구분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 연도	기관명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지정유형
1	2007	한국관광공사	준정부기관
2	2007	한국광해광업공단	공기업
3	200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준정부기관
4	2007	한국농어촌공사	준정부기관
5	200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준정부기관
6	2007	대한석탄공사	공기업
7	2007	한국도로공사	공기업
8	2007	한국석유공사	공기업
9	2007	한국수자원공사	공기업
10	2007	한국전력공사	공기업
11	2007	한국조폐공사	공기업
12	2007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13	2007	한국철도공사	공기업
14	2009	한국가스공사	공기업

15	2009	한국공항공사	공기업
16	2009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정부기관
17	2009	국민체육진흥공단	준정부기관
18	2009	한국마사회	공기업
19	2009	예금보험공사	준정부기관
20	2009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기업
21	2009	한국자산관리공사	준정부기관
22	2009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기업
23	2012	국립공원공단	준정부기관
24	2012	국민연금공단	준정부기관
25	2012	한국국토정보공사	준정부기관
26	201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준정부기관
27	2012	한국국제협력단	준정부기관
28	2012	한국산업단지공단	준정부기관
29	2012	한국연구재단	준정부기관
30	2012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	준정부기관

### 3. 인식 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연구설계

#### 3.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인식 조사

##### 3.1.1 분석 대상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자는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과 자체관리기관으로 구분한 후 선행 연구를 진행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직접 섭외(judgment sampling)하거나, 인터뷰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다른 대상자의 소개를 의뢰하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통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를 구한 뒤 확보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7>과 같다.

<표 7>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인터뷰 참여자 현황

인터뷰 참여자	기관명	공공기관 지정유형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여부	성별	연령대	기록물관리 업무경력
P1	A	준정부기관	비지정	여	40대	10년
P2	B	준정부기관	비지정	여	30대	7년
P3	C	준정부기관	지정	남	40대	14년
P4	D	공기업	지정	남	30대	7년
P5	E	공기업	비지정	여	30대	8년
P6	F	공기업	지정	남	30대	3년
P7	G	준정부기관	지정	여	30대	2년
P8	H	준정부기관	비지정	남	30대	9년
P9	I	준정부기관	비지정	여	30대	2.5년

### 3.1.2 인터뷰 질문지

인터뷰를 위한 질문지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기관의 기록관리 일반현황,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제도, 기관의 기록관리 수준과 경영성과의 연계성,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개인별 상황으로 구성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세부적인 질문은 반구조화된 개방형으로 구성하였다.

<표 8>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인터뷰 질문 내역

영역	질문
기관의 기록관리 일반현황	1. 기록관 조직은 기관의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습니까?(담당인원, 자격 보유자 수 등) 2. 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3. 기관 구성원들의 기록물 활용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구체적 활용 사례)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제도	1.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 내용과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2.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과 자체관리기관 간 기록관리 업무분야의 차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3. 국가기록원이 지정제도 관련하여 추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록관리 수준과 경영성과	1. 기록관리와 경영성과를 서로 연계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2.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록관리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3. 기록관리와 경영성과의 상호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개인에 관한 사항	1. 귀하의 연령대는? 2. 귀하의 근무 형태는? 3. 귀하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근무한 총기간은? 4. 현재 기관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재직할 기간은?

### 3.1.3 자료의 수집

인터뷰는 총 9명(남 4명, 여 5명)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23일부터 2024년 10월 8일까지 실시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별 약 30분에서 70분가량 이루어졌으며, 대면 인터뷰와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지는 연구 대상자가 인터뷰 참여에 동의한 이후에 설명자료와 동의서를 함께 e-mail로 사전에 전달하여 질문을 충분히 숙지한 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으며 실시한 개인별 인터뷰 진행 및 자료수집 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9>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인터뷰를 통한 자료수집 현황

인터뷰 참여자	성별	인터뷰 날짜	소요시간	인터뷰 진행방법
P1	여	2024년 9월 23일	51분	ZOOM / 녹화
P2	여	2024년 9월 27일	53분	대면 / 녹취
P3	남	2024년 9월 27일	54분	ZOOM / 녹화
P4	남	2024년 9월 30일	46분	ZOOM / 녹화
P5	여	2024년 10월 1일	33분	ZOOM / 녹화
P6	남	2024년 10월 2일	40분	ZOOM / 녹화
P7	여	2024년 10월 2일	50분	ZOOM / 녹화
P8	남	2024년 10월 8일	41분	대면 / 녹취
P9	여	2024년 10월 8일	46분	대면 / 녹취

### 3.2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데이터 분석

#### 3.2.1 분석대상 공공기관

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 이유는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는 기관의 유형이 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분석대상 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 평가결과까지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의 지정기준이 2023년도부터 크게 변경되어 기관 수의 변동이 있었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평가지표가 개정되기 때문에 분석대상 집단의 일관성과 평가지표의 동일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석대상 기관 수를 정리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공공기관 지정유형별 분석대상 총괄표

지정 유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합계
	소계	국가기록원 직접관리	기관 자체관리	소계	국가기록원 직접관리	기관 자체관리	
기관 수	36	14	22	57	16	41	93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과 자체관리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 그룹 간의 차이는 10년 이상 변함없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는 과정을 거친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관들보다 기록관리 수준이 향상되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는 기관의 경영평가 종합등급이 자체관리기관보다 좋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평가 범주는 크게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으로 대별된다. 경영관리 범주는 기관별 공통으로 적용되는 영역으로써 상대적인 비교가 용이하다. 이에 비해 주요사업 범주는 기관별로 설립목적과 그에 따른 수행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성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록관리의 영역은 경영관리 범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는 기관의 경영관리 범주 등급이 자체관리기관의 등급보다 더 좋을 것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지만 서로 성격은 조금 차이가 있다. 전자는 기업의 성격이 강해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후자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중에서도 공기업에 속하는 기관들이 있고,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해당 그룹 안에서의 차이는 어떠한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는 기관은 해당 기관이 속한 그룹에서 자체관리기관보다 경영평가 종합등급이 더 좋을 것이다.

#### 3.2.2 데이터의 수집

이번 연구에서 필요한 자료는 크게 국가기록원 소관 사항과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이 있다. 국가기록원 소관 사항은 공공기관 중 국가기록원 직접관리 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고시를 통해 확인 및 수집하였다.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 중 공공기관 유형분류에 관한 사항은 매년 고시하는 공공기관 지정 고시를 확인하였고,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은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과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여 수집 및 정리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연도별, 기관별 데이터를 정리하여 요약된 표로 정리하였으며 <표 11>과 같다.

<표 11>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결과표(2017~2021년도)

구분	기관명	직접관리 기관지정	공공기관 지정유형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종합	경영 관리	주요 사업	종합	경영 관리	주요 사업	종합	경영 관리	주요 사업	종합	경영 관리	주요 사업	종합	경영 관리	주요 사업
1	강원랜드	미지정	공기업	-	-	-	C	D	B	C	C	C	C	B	C	C	C	C
2	인천국제공항공사	2009	공기업	A	A	A	A	A	A	B	B	B	B	B	B	C	B	D
3	한국가스공사	2009	공기업	C	C	C	B	B	C	C	C	D	D	D	D	C	B	C
4	한국공항공사	2009	공기업	B	B	B	B	B	C	B	B	B	B	B	B	C	C	D
5	한국남동발전	미지정	공기업	B	B	B	B	B	B	A	A	A	A	A	B	A	A	B
6	한국남부발전	미지정	공기업	B	C	B	A	B	A	B	A	C	B	B	B	A	B	B
7	한국동서발전	미지정	공기업	A	B	A	B	B	B	B	B	B	A	B	A	S	A	A
8	한국서부발전	미지정	공기업	C	D	C	C	C	C	B	B	B	B	A	B	C	C	B
9	한국석유공사	2007	공기업	D	C	D	C	C	B	C	C	C	D	D	D	C	C	C
10	한국수력원자력	미지정	공기업	B	B	B	B	B	B	A	A	A	A	A	A	B	B	B
11	한국전력공사	2007	공기업	B	B	B	B	B	B	B	B	B	B	B	C	B	C	B
12	한국중부발전	미지정	공기업	B	C	A	A	A	A	C	C	D	C	B	C	A	B	B
13	한국지역난방공사	2009	공기업	B	B	B	C	B	C	B	B	C	B	B	B	A	A	C
14	그랜드코리아레저	미지정	공기업	E	D	E	D	C	E	C	C	C	C	C	C	D	D	D
15	대한석탄공사	2007	공기업	E	E	E	E	E	D	D	E	C	C	D	C	D	D	C
16	에스알	미지정	공기업	-	-	-	-	-	-	D	C	C	B	C	B	C	C	B
1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미지정	공기업	B	B	A	C	C	B	C	D	C	C	D	C	B	B	D
18	주택도시보증공사	미지정	공기업	B	B	C	B	C	B	C	C	C	B	B	C	C	B	C
19	한국가스기술공사	미지정	공기업	C	C	B	C	C	D	B	C	B	B	C	B	C	C	B
20	한국광해광업공단	2007	공기업	D	D	C	C	D	C	C	C	C	C	B	D	B	A	D
21	한국도로공사	2007	공기업	A	B	A	B	A	B	A	A	A	A	A	B	A	B	A
22	한국마사회	2009	공기업	C	C	C	D	D	D	C	D	C	E	E	E	D	D	D
2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지정	공기업	C	C	C	B	B	C	C	C	D	C	B	D	B	B	C
24	한국부동산원	미지정	공기업	B	B	A	B	B	B	A	A	A	A	A	A	A	A	B
25	한국수자원공사	2007	공기업	A	A	B	A	A	A	B	B	B	A	A	A	A	B	A
26	한국전력기술	미지정	공기업	C	D	B	D	D	C	C	C	D	B	C	B	B	B	B
27	한국조폐공사	2007	공기업	B	B	B	B	B	A	A	A	A	B	B	B	C	C	B
28	한국철도공사	2007	공기업	C	C	C	B	B	B	D	D	D	C	E	B	E	E	C
29	한국토지주택공사	2007	공기업	A	A	B	A	A	A	A	A	A	D	C	D	D	D	C
30	한진KDN	미지정	공기업	C	B	B	B	B	B	B	B	B	B	B	B	B	A	C
31	한진KPS	미지정	공기업	D	C	C	D	C	E	B	C	B	B	C	A	B	B	B
32	해양환경공단	미지정	공기업	C	B	C	C	D	C	B	B	B	B	B	B	A	A	A
33	부산항만공사	미지정	공기업	C	C	C	B	C	B	C	C	D	C	C	D	C	C	D
34	인천항만공사	미지정	공기업	B	A	B	A	A	B	B	B	B	B	B	C	C	C	C
35	여수광양항만공사	미지정	공기업	C	B	C	B	B	B	B	B	B	B	A	C	B	B	A
36	울산항만공사	미지정	공기업	D	C	D	C	C	C	C	C	D	C	C	C	B	B	C
37	공무원연금공단	미지정	준정부기관	B	B	B	B	B	B	B	B	C	C	B	C	B	A	C
38	국민연금공단	2012	준정부기관	B	B	C	B	B	C	B	B	B	C	C	C	B	B	B
39	국민체육진흥공단	2009	준정부기관	C	B	C	B	B	C	C	B	D	C	B	D	C	A	D
40	근로복지공단	미지정	준정부기관	C	C	B	B	C	A	C	B	C	B	B	B	B	B	A
41	기술보증기금	미지정	준정부기관	A	A	B	A	A	A	B	A	C	B	A	B	B	B	A
42	신용보증기금	미지정	준정부기관	B	A	C	A	B	A	B	B	B	A	A	S	A	B	A
43	예금보험공사	2009	준정부기관	B	A	C	B	A	C	A	A	B	B	B	B	B	B	A
4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12	준정부기관	C	B	C	B	B	B	A	A	A	A	A	B	B	A	B
45	한국무역보험공사	미지정	준정부기관	B	B	C	A	A	B	B	A	C	B	A	B	B	A	B
46	한국자산관리공사	2009	준정부기관	A	A	A	B	A	B	B	B	C	A	A	B	A	B	B
47	한국주택금융공사	미지정	준정부기관	C	B	D	B	B	B	A	A	B	A	A	B	A	A	B
4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미지정	준정부기관	C	C	C	C	C	C	C	C	C	B	B	C	B	B	B
4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지정	준정부기관	A	B	A	B	B	B	A	B	A	A	B	B	C	C	D
50	국가철도공단	미지정	준정부기관	C	C	C	C	C	C	A	A	C	C	C	D	B	B	B

51	국립공원공단	2012	준정부기관	B	B	B	C	B	C	B	C	B	B	C	B	B	C	A
52	국립생태원	미지정	준정부기관	-	-	-	-	-	-	-	-	D	D	D	D	D	D	C
53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준정부기관	A	A	B	A	S	B	A	A	C	B	A	C	A	A	B
54	국토안전관리원	미지정	준정부기관	-	-	-	-	-	-	D	D	C	C	C	B	C	D	B
5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7	준정부기관	A	A	A	A	B	A	A	B	A	A	B	A	B	B	C
56	도로교통공단	미지정	준정부기관	C	C	C	B	C	B	B	B	B	B	B	B	A	B	A
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미지정	준정부기관	D	E	C	D	E	C	C	D	B	B	C	A	B	C	B
58	우체국금융개발원	미지정	준정부기관	-	-	-	-	-	-	-	-	-	C	C	D	C	C	C
59	우체국물류지원단	미지정	준정부기관	E	D	D	D	E	B	E	E	D	E	D	E	E	D	E
60	축산물품질평가원	미지정	준정부기관	C	C	B	D	C	E	C	C	D	B	B	B	C	C	C
61	한국가스안전공사	미지정	준정부기관	B	D	A	C	D	B	C	D	A	C	C	D	C	C	B
62	한국고용정보원	미지정	준정부기관	-	-	-	-	-	-	-	-	-	D	D	D	C	C	C
63	한국관광공사	2007	준정부기관	-	-	-	C	A	D	A	B	A	A	A	C	B	A	C
64	한국교통안전공단	미지정	준정부기관	B	S	C	C	B	C	B	B	B	C	C	B	C	D	B
65	한국국제협력단	2012	준정부기관	E	D	C	C	C	D	A	A	B	A	A	B	A	A	B
66	한국국토정보공사	2012	준정부기관	A	A	A	B	A	C	C	D	B	C	C	C	B	B	C
6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07	준정부기관	B	B	B	B	B	B	B	B	B	A	B	A	A	S	C
68	한국농어촌공사	2007	준정부기관	B	B	A	B	B	B	B	C	A	D	E	C	C	D	B
6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미지정	준정부기관	-	-	-	-	-	-	B	C	A	B	C	A	B	C	B
7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미지정	준정부기관	B	B	C	B	B	C	D	C	E	C	B	C	C	C	D
7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미지정	준정부기관	A	C	S	A	B	S	B	C	B	B	B	B	A	B	A
72	한국산업복지진흥원	미지정	준정부기관	-	-	-	-	-	-	-	-	-	-	-	-	D	B	E
7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지정	준정부기관	-	-	-	A	A	B	C	C	B	B	C	B	C	C	C
7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지정	준정부기관	-	-	-	-	-	-	-	-	-	-	-	-	C	D	B
75	한국산업단지공단	2012	준정부기관	B	C	B	C	D	B	D	D	D	C	C	B	C	C	B
7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미지정	준정부기관	C	B	E	C	B	D	B	C	B	C	C	C	D	C	E
77	한국산업인력공단	미지정	준정부기관	B	B	C	C	C	D	D	D	D	C	C	C	C	C	C
78	한국석유관리원	미지정	준정부기관	C	C	C	B	C	B	C	C	D	C	C	C	D	C	C
79	한국소비자원	미지정	준정부기관	B	C	A	B	B	B	C	C	C	C	C	B	D	D	D
8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미지정	준정부기관	C	B	C	C	C	B	D	C	D	D	D	D	C	C	C
81	한국에너지공단	미지정	준정부기관	A	B	A	A	B	S	A	C	A	A	B	A	B	B	B
82	한국연구재단	2012	준정부기관	B	B	B	C	B	C	B	B	C	A	B	B	A	B	B
8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미지정	준정부기관	D	D	C	D	C	D	C	C	C	B	C	B	B	B	C
84	한국인터넷진흥원	미지정	준정부기관	B	C	B	C	D	B	C	D	B	C	C	C	B	C	B
8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미지정	준정부기관	B	C	B	A	B	A	B	C	B	B	B	B	B	B	C
86	한국장학재단	미지정	준정부기관	C	C	C	D	D	C	B	B	C	B	B	C	B	B	C
87	한국전기안전공사	미지정	준정부기관	C	C	C	C	C	C	B	C	A	C	C	B	C	C	B
88	한국전력거래소	미지정	준정부기관	C	C	C	C	C	D	D	C	D	D	D	B	C	B	C
89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12	준정부기관	C	C	B	C	D	C	B	C	B	B	C	A	B	C	A
9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미지정	준정부기관	C	C	C	B	C	B	B	B	C	D	D	C	E	E	C
91	한국환경공단	미지정	준정부기관	D	C	E	D	C	D	B	B	D	B	B	C	A	A	B
9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미지정	준정부기관	-	-	-	-	-	-	-	-	-	C	C	C	B	B	C
9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미지정	준정부기관	-	-	-	-	-	-	-	-	-	-	-	-	D	D	D

### 3.2.3 분석방법

이번 연구의 데이터는 등급으로 이루어진 순서형(ordinal) 범주형(categorical)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도 별로 독립된 데이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순서형 데이터의 그룹 간 분포 차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다. Mann-Whitney 검정 결과 대립가설을 채택하면 양측 검정이 아닌 단측 검정을 통해 어떤 그룹의 등급이 더 높고 낮은지 검정하였다. 최대한 데이터 관측 수 보존을 위해 연구 과제마다 형성된 독립된 데이터 각각에서 결측값을 제외한 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검정 통계량 W와 유의확률(p-value)을 도출하며 유의확률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두 그룹의 분포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유의수준은 사회과학에서 통용되는 0.05를 기준으로 하되, 양측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1보다 작은 경우도 고려하였다.

##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인식과 기관 경영평가 결과 분석

### 4.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인터뷰 결과

#### 4.1.1 인터뷰 결과의 코딩

연구자의 분석 및 해석과 관련된 작업이 병행되면서 다음과 같은 분석적인 질문의 과정을 거쳤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이 자주 언급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의견은 무엇이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은 개인과 그 기관이 처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가?, 기록관리 분야 발전을 위해 적합한 방향은 무엇인가? 등이다.

지속적 비교 분석과 자료를 여러 방식으로 조합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개념들과 범주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의미를 결합하고, 조직함으로써 하나의 전체적인 의미체계로서의 구조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162개의 키워드, 15개의 하위범주, 5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코딩의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인터뷰 내용의 의미구조 도출 코딩

상위범주	하위범주	키워드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기관 상황	기관의 인식	- 기록관리를 일상적 업무로 인식 - 경영지원팀, 총무팀, 별도부서 구성
	개인의 인식	-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 부족 - 기록관리는 주로 1인 담당, 부가 업무병행
	인력의 운영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추가 채용 필요 - 기록관리 분야 인력보강 또는 순환 고민
	해당 기관의 기록관리 분야 전망	- 조직 구성원의 인식개선 필요 - 현재 상태 지속, 기록관리 전담부서 운영 희망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제도	지정기준	- 기준 유무, 모호성, 적용의 일관성 부족 - 공공기관의 상황변화 고려 필요
	지정주기	- 지정주기의 부재, 정기적 운영 필요 - 타 부처 사례 참고, 활성화 필요
	담당자 의견	- 제도 정비 필요성 인지, 인력 등 부족 - 제도 개선을 위한 내부 검토 중
기록관리와 경영성과의 연계성	기록관리 기관평가	-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만 수검 - 기록관리 업무의 정형화, 평가업무의 부담
	공공기관 경영평가	- 공공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큼 - 최근 기록관리 분야 포함, 구성원의 관심 증가, 기록관리 분야 비중 축소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제도의 개선방안	지정제도 정례화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지정제도 참고 필요 - 정기적 운영, 공공기관 예측 가능성 확보
	지정기준 명확화	- 기관의 정원, 예산, 존속기간 고려 - 수행업무, 기록관리 수준에 따라 지정
	지정기관 확대검토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전체로 확대 - 기록관리 수준 향상 계기로 활용 가능
	평가제도 연계강화	- 타 부처의 다양한 사례 참고 필요 - 공공기관에 대한 영향력 강화 가능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부담 우려

#### 4.1.2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기관 상황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과 자체관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생각을 듣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이해하고자 했던 부분은 각 기관의 운영 상황이었다. 특히,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기관의 인식을 알아야 뒤이어 나오는 여러 내용을 비교적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9명은 모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실무적으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계에 있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제도 전반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조직의 상황도 정확히 설명해 주었다.

기관에서는 대체로 기록관리 업무를 일상적이면서 크게 비중 있게 인식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경영지원 업무의 일부, 총무 업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별도 부서로 구성한 기관도 있었지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1명뿐이고 직제 개편 사유도 명확하지는 않았다. 또한, 기관별로 인식에 대한 편차도 당연히 존재하였으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답변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혼자 업무를 보고 있는데 평가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4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임자가 퇴사하시고 3년 공백이 있었는데 이제 직접관리기관 평가에서 점수가 엄청 낮게 나와 가지고, 사장님이 이게 도대체 뭐 한거나 새로 빨리 뽑으라 해서 그제야 부랴부랴 채용되었어요.” (인터뷰 참가자, P4)

“저는 입사할 때부터 부서장님께서 ‘년 0.5는 기록관리이고, 0.5는 행정이니 행정업무도 해야 한다.’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기관에 입사하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의 하나는 기관에서 일단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고 굉장히 낮고 귀찮은 업무로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주임이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업무를 기안해서 그걸 계획해서 전사적으로 사고를 재정비하고 기록물을 재구성하는 부분들이 불가능하다는 걸 빨리 깨달았어요.” (인터뷰 참가자, P2)

“이제 저희 기록관리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여러 센터가 많아서 원래 센터가 좀 많은 조직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요원 두 명이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또 이제 대부분 기관당 한 명씩만 있기도 하고, 이제 ‘한 명만 하면 되지 뭐 두 명씩이나 하나?’라는 인식인 것 같기도 해요.” (인터뷰 참가자, P7)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생각하는 기관의 상황과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접 들으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특히, 아직도 1인이 담당하는 기록관이 많다는 부분과 기록관리 업무 외에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굳어진 부분은 매우 아쉽게 느껴졌다. 특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추가로 채용하고도 전담인력의 강화보다는 인력 순환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었다.

“과장님 연차가 쌓이고 이제 다른 업무도 해보시고 이제 승진하고 순환 전보도 할 때가 돼서 이제 저를 채용한 것 같은데 근데 채용이 되고 나니까 순환 전보 안 시키고 승진만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같은 부서에서 계속 있습니다.” (인터뷰 참가자, P5)

“지금 분장상으로 다른 일반 자격 없는 분이 기록관리 업무, 행정직으로 들어온 분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분이 기록관리 관련해서 기록물 평가 심의회 개최하거나 아니면 그럴 때 도와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담당자가 바뀌고 있거든요.” (인터뷰 참가자, P2)

“저희 같은 경우는 이직은 아니고 전임자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제가 이제 추가로 이제 채용이 되었고,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유 업무이긴 하지만 본인이 원하시면 이제 업무를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참가자, P6)

“먼저 근무 하시던 분이 계셨고 제가 추가로 들어온 케이스였어요. 그분은 현재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참가자, P9)

각자 여러 가지 노력으로 지금의 위치에 와 있지만 조직 내에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라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인터뷰에 참여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중 다수는 현행체제로는 크게 바뀔 것이 없고 이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 그냥 공공기관 직원으로 이 회사 다니는 거고 기록관리 이슈 생길 때 내가 알고 있는 걸 활용하는 정도로만 지내도 문제가 없다고...” (인터뷰 참가자, P2)

이러한 상황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는 없다 보니 새로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해 1명이 그 일을 전담하고 기존 인력은 다른 행정업무를 하러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기록관리 분야 입장에서는 기관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늘어나고 일정 인원이 부서를 이루어 역량을 결집해 해당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 국민이 소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공공기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다.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저희 기관에는 2명이 있는데 사실상 1명만 하고 있어서 지금 담당은 저 하나입니다. 원래는 이제 계속 한 명만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저희가 순환 근무를 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가면은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기록관리 업무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 더 뽑아서 제가 들어오게 된 거고 제가 들어오면서 올해 초에 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인터뷰 참가자, P7)

인지도가 높은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면 다른 공공기관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떠한 체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참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4.1.3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제도

공공기관에 기록관리 업무가 부여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이 현장에 배치되던 초기에 업무추진의 당위성과 기관 구성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직접적인 관리와 평가 등이 가시적으로 수반되면서 그나마 업무를 추진하기에 수월했다고 한다. 다만, 여기에서 수월했다는 표현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왜 기록관리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덜 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었고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한다. 과거에 세운 기준이 있지만 2012년 이후로 개정되기도, 운영되기도 않은 상황에서 국가기록원 담당자들도 여러 차례 바뀌었으니, 변화의 양상을 명확히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 직접 관리 대상 기관을 선별하는 기준도 되게 모호했었고, 그 기관들을 선별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지표조차도 이제 투명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어요.” (인터뷰 참가자, P1)

“직접 관리 대상 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이 기준을 모르겠어요. 특정 규모, 인원수 등등 제가 알리오에서 임직원 숫자까지 다 찾았었던거든요. 직접 관리 기관 지정 기준을 기준이 불명확하고 그로 인해서 각 기관 간의 편차가 생기고 있는 부분을 지금 10년 넘게 사실상 국가기록원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터뷰 참가자, P2)

“국가기록원이 무슨 기준으로 직접관리기관을 지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간에 한 40여 개 가까이 되는 기관들은 계속 평가를 받다 보니 상대적으로 평가를 잘 받으려고 하다 보니 상향 평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뷰 참가자, P3)

“최근에 이제 저희 실장님께서도 여쭙보셔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었는지...국가기록원에 연락을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직접관리기관 선정 기준이 뭐냐고 여쭙봤을 때 딱히 기준이 있다고 하는 그건 없으시더라고요.” (인터뷰 참가자, P4)

“사실 이거 지정을 해놓은 게 진짜 기준이 기준을 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최우선적으로 일단 기준 마련을 일단 먼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인터뷰 참가자, P7)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도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지정 심사를 받기 때문에 더욱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문화된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기준을 재정비하고, 지정주기 또한 정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사실상 국가기록원에서 공공기관까지는 본인들이 관리하기에 캐파(capacity)가 좀 달리고 과부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느낌이었어요. 기관마다도 차이가 너무 큰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인터뷰 참가자, P2)

“어쨌든 규모가 좀 있는 그런 기관들 대상으로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지정된 기관이 변하지도 않고 사실 그래서 이 체도를 그냥 유지하는 거에 의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저희는 이 평가를 안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관심이 없기도 해요.” (인터뷰 참가자, P5)

#### 4.1.4 기록관리와 경영성과의 연계성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은 정기적으로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받고 있다. 많은 공공기관 중 일부만 여기에 해당 되면서 기록관리 수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일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관별로 자율성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기록관리의 수준을 일정 부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을 확대하고, 정기적인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이 확대되면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한 업무 부담, 평가결과에 대한 부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관 내에서 직접관리 대상 기관의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일단 무슨 업무를 하든 간에 이 평가 지표에 맞춰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과거에 기록물관리와 경영성과 연계 방안 중 하나로 기록경영시스템표준 ISO 30300 도입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참가자, P1)

“상호 연계성이나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반영이 되거나 하면은 좀 높아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역량을 진짜 많이 봤기 때문에 직접관리 대상기관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연계한다든지...” (인터뷰 참가자, P2)

“국가기록원이 좀 정책적으로 좀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기재부의 운영 설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국정원의 보안 업무 관련된 것들은 과감하게 지표를 공공기관에 밀어 넣는 거를 많이 잘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참가자, P3)

국가기록원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기록관리 업무 분야를 포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이 공통적으로 예전보다 기관 내부적으로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이야기한다.

“결국은 모든 기관들이 사실 경쟁에 죽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기록관리 내용이 윤리경영에 들어갔다면은 조직 내에서 이제 경영의 미션이나 비전 내지는 경영실적 내지는 이제 전략 과제 내에서도 기록관리 설명할 수 있다고 봤고요. 그러다 보니 조직 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상대적으로 있었어요.” (인터뷰 참가자, P3)

“아무래도 경영평가에 더 힘을 주게 되면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업무 동력이 되니까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제 개량평가 지표에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 (인터뷰 참가자, P5)

“경영평가에서 기록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더 강해져야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참가자, P6)

#### 4.1.5 인터뷰에 참가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인식

인터뷰에 참가한 인원들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에서 근무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4명과 자체관리기관에서 근무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두 그룹에서 공통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 기준의 불명확함이었다.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였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은 국가기록원 직접관리 여부와 관계없이 조금씩 달랐다.

먼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 처한 현재 상황에 따라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현행 유지를 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지정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은 주로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영역의 확대와 추동력 확보를 위해서였고,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은 기록관리 업무를 힘겹게 수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 확대가 오히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기관 자율적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잘하고 있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에 업무적인 부담을 가중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인터뷰에 참가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중 대부분은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 4.2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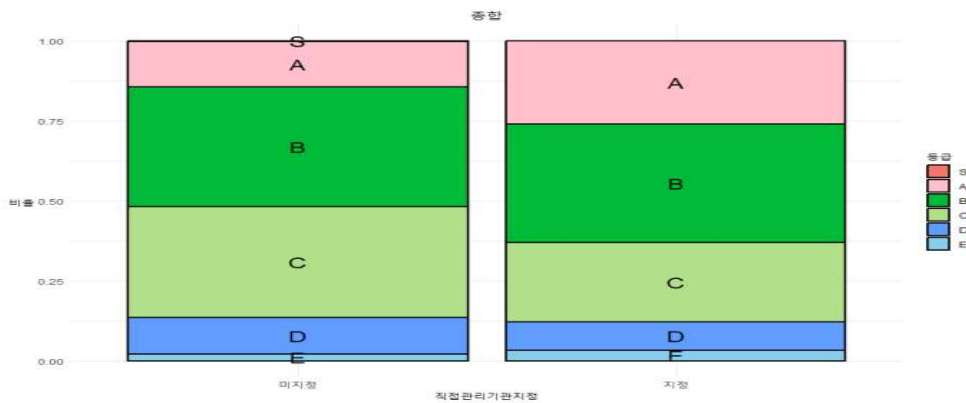
### 4.2.1 기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등급 비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정부에 의해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기관별로 종합 등급과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별 등급도 함께 발표된다. 이러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서 발간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연간 성적표와도 같은 경영평가 결과 종합 등급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을 동일 유형의 그룹에 속해 있지만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지 않는 기관들과 2017년도부터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의확률이 0.0048로 유의수준 기준값인 0.05보다 작으므로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들의 경영평가 종합등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의 경영평가 등급별 분포를 종합하면 아래의 <표 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따라서, 연구설계 과정에서 설정한 “가설 1 :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는 기관의 경영평가 종합등급이 자체관리기관보다 좋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할 수 있다.

<표 13> 2017~2021년도 기관별 경영평가 종합등급 결과 비교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지정	0	39	55	37	13	5
미지정	1	40	106	98	32	6
검정 통계량(W) : 18034			유의확률 : 0.0048			



<그림 1> 국가기록원 지정여부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등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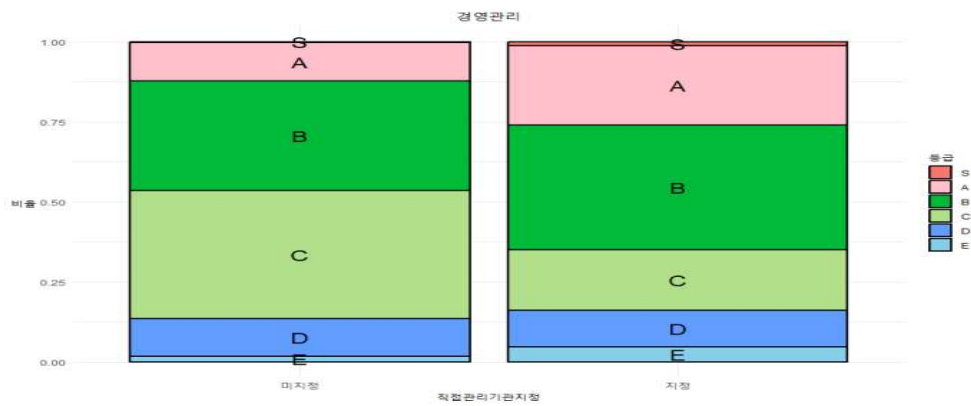
### 4.2.2 기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관리 범주 등급 비교

기록관리는 기관 운영의 전반에 관련되어 있어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던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도 기록관리는 경영관리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과 자체관리기관의 경영관리 수준을 경영관리 범주 등급으로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17~2021년도 기관별 경영관리

범주 등급을 정리하여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과 자체관리기관의 결과를 정리하여 분석하면 <표 14>와 같다. 유의확률이 0.0005로 유의수준 기준값인 0.05보다 작으므로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들의 경영평가 경영관리 범주 등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따라서, 연구설계 과정에서 설정한 “가설 2 :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는 기관의 경영관리 범주 등급이 자체관리기관의 등급보다 저 좋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할 수 있다.

<표 14> 2017~2021년도 기관별 경영평가 경영관리 범주 등급 비교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지정	2	37	58	28	17	7
미지정	1	34	97	113	33	5
검정 통계량(W) : 17197			유의확률 : 0.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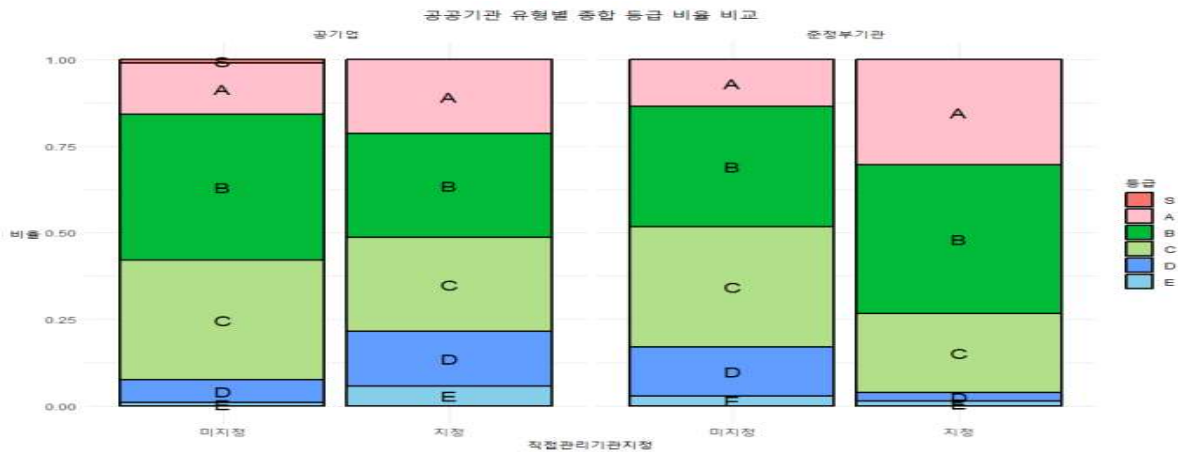
<그림 2> 국가기록원 지정여부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관리 범주 등급 비교

#### 4.2.3 기관의 공공기관 유형별 경영평가 종합등급 비교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유형분류 체계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속해 있다. 따라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나누어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과 자체관리기관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대상 기간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기업에서는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기준값인 0.05보다 높아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이 자체관리기관들 보다 경영평가 종합등급이 좋다고 말할 수 없으나, 준정부기관에서는 유의확률이 유의수준보다 낮아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의 경영평가 종합등급이 더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5> 2017~2021년 공공기관 유형별 경영평가 종합등급 비교

기관유형	지정여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공기업	지정	0	15	21	19	11	4
	미지정	1	16	45	37	7	1
준정부기관	지정	0	24	34	18	2	1
	미지정	0	24	61	61	25	5
기관유형		검정 통계량(W)				유의확률	
공기업		4047.5				0.3422	
준정부기관		4710.5				0	



<그림 3> 공공기관 유형별 경영평가 종합등급 비교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의 성격이 강하고 경영평가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재무적 지표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는 반대로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우선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무적 지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기록관리와 연관된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등의 요소에 영향을 좀 더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구설계 과정에서 설정한 “가설 3 :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는 기관은 해당 기관이 속한 그룹에서 자체관리기관보다 경영평가 종합등급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할 수 없다.

## 5.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제도의 개선방안

### 5.1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 기준 정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된 바와 같이 기록관리 업무환경은 아직도 매우 열악하다. 이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한 외부적인 도구로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은 한 번쯤 고민했었다. 그러나 인터뷰를 통해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언급된 내용은 ‘직접관리기관 지정기준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오히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불명확한 기준과 더불어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 제도 자체가 이제는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인터뷰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은 본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일단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동의하였다. 또한, 세 차례 직접관리기관을 지정한 이후 변화가 없는 것도 의아해하였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같이 일정 규모에 있는 기관들은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가지고 있었다. 2012년 이후로 그대로 멈춰버린 제도를 이제는 다시 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분석했다. 또한,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의 성과가 더 좋다는 유의미한 결과도 확인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가 좀 더 경영의 측면에서 강화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기관 상황부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개인별 상황까지를 종합해 보면 국가기록원 직접

관리기관 지정제도의 개선은 필수적이며 공공기관 기록관리 분야의 제도약을 위해 필요한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원론적인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제도의 정례적 운영이다. 인터뷰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해제되기도 하는 절차가 운영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제도처럼 매년 지정하거나, 기록관리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연초에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매년 지정하는 방식은 행정적 소요가 매우 크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각종 정책관련 계획 수립의 단위인 5년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번째,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은 인터뷰에서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가기록원에서 과거에 정한 기준은 지정할 때마다 변화했는데 2007년에는 정부투자기관을 지정하였다. 2009년에는 1차 정성기준으로 기관의 설립 목적과 수행업무를, 2차 정량기준으로 기관의 존속기간이 10년 이상인지와 정원이 500명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2012년에는 1차 정성기준으로 기록관리 수행 가능성을, 2차 정량기준으로 기관의 존속기간이 10년 이상인지와 정원이 100명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렇게 기준이 매번 바뀌다 보니 기준으로 기관을 선별한 것이 아니라 기관을 정해놓고 기준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세 번째,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은 ‘동일한 유형의 그룹에 속해 있다면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 기관들은 이미 조직의 규모, 인력, 예산 등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 중에서 일부만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 사이에서도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기록관리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통해 관리되면 지표에 매몰되어 업무의 획일화 또는 정형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기관들은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받지 않음으로써 그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선 공공기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입장에서는 업무적으로 다소 힘들 수 있겠으나 직접관리기관을 확대하고 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기록관리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5.2 기록관리 기관평가 확대 및 경영평가 연계

공공기관 중에서 자체관리기관의 원활한 기록관리 업무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업무수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기관 내에서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혼자서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은 앞에서 살펴본 인터뷰 내용과 같이 국가기록원에서 정책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은 각 기관의 내부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써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주장하고 있었으며,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공기관 전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영평가 제도와 더욱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중 공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김지현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평가가 갖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의견으로 모든 인터뷰 참여자

가 평가 자체가 기록관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또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라고 하였다. 또한,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지 않고 있는 자체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은 기록물관리 업무에 대해 평가받게 된다면 기관의 내부 직원들도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기록물관리 업무가 더 이상 부가적인 귀찮은 업무가 아닌 통상적인 업무의 진행과 더불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적인 업무가 될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정부기관에 의한 기록관리 기관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유형분류 및 지정기준을 참고하여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 기준이 바뀌게 되면 제도 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기록관리 기관평가 대상 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당초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받고 있었던 공공기관의 수보다 대폭 그 수가 늘어나게 된다.

국가기록원에서 일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기록관리를 포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기록관리 부분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는 세부평가내용 수준으로도 포함되지 못하고 세부평가내용 하위에 착안사항 정도로 들어가게 되었다.

<표 16>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중 기록관리 분야 도입(최초)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윤리경영	지표정의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3점
	세부평가내용	① 기관의 윤리경영체계의 구축·운영 및 윤리경영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 윤리경영 관련 전담조직과 지침(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임원 직무청렴계약 규정 등) 마련·운영 여부, 비윤리적 행위 신고, 교육 실적 등 ②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 <b>기관의 중요 기록물 분류체계 마련 등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b>

<표 17>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중 기록관리 분야(현재)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윤리경영	지표정의	경영활동시 경제적·법적 책임과 더불어 사회적 통념상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려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1.5점
	세부평가내용	① 윤리의식 확립, 관리체계 구축, 윤리위험 식별, 윤리위험 통제활동, 내·외부 신고제도, 윤리경영시스템 모니터링 등 윤리경영표준모델에 따른 윤리경영 노력 * 윤리경영 관련 전담조직과 지침(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임원 직무청렴계약 규정 등) 마련·운영 여부, 갑질근절방안 마련·이행, 비윤리적 행위 신고, 교육 실적, <b>중요 기록물 분류체계 마련 등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등</b> * 연초 시행계획 작성 후 그 이행실적을 제출(기관별 비위행위 처리 모범사례 포함) * 회계담당자 교육·훈련 지원, 회계관계직원 우대채용 및 처우개선, 회계통제규정·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및 이행 등 회계 신뢰성 제고 및 책임강화 노력 ②~③ (이하 생략)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중 일부는 차라리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국가정보원의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등과 같이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에서 공공기관의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 결과에 직접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5.3 기록경영시스템 표준(ISO 30301)의 도입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기록관리 업무가 사소하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 기관 업무는 공문 형태의 기록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기록관리 업무가 경영에 있어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5년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사례가 있다. 여기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공공기관에서 국제적 기준인 기록경영시스템 표준(국가기술표준원, 2020, KS X ISO 30301)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ISO 30301 표준은 조직 내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기록관리 시스템의 설계, 구현,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관리 정책의 수립, 기록관리 프로세스의 설계, 기록관리와 관련된 각종 위험 관리, 기록관리시스템의 성과측정 및 개선 등의 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 감소 및 규제 준수 강화, 조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효율적 자원 관리 및 비용 절감,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기반으로 조직의 전략적 목표 지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ISO 30301 표준은 기록을 단순한 관리의 대상에서 경영의 영역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경영시스템 표준이다. 기록경영시스템은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과 같이 조직 경영시스템의 일부이며 품질경영시스템이 '품질'에 대한 것이라면, 기록경영시스템은 '기록'에 대한 것이라는 부분만 다를 뿐 '조직을 관리하는 경영시스템'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기록을 기관의 핵심 자산으로 판단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시스템 중 하나로 만들어진 ISO 30301 표준은 단순히 기록경영시스템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록의 전사적 경영 관점에서 관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인증제도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록관리가 경영의 관점에서 추동력을 얻을 수 있는 표준체계가 이미 마련되었지만, 아직 인증을 받은 공공기관은 극소수이다.

공공기관에서 ISO 30301 표준의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고 인증을 받은 후에는 경영진과 구성원들의 인식개선과 기록관리 업무의 일상화 및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경영시스템(ISO 30301) 표준의 인증을 받는 기관이 늘어나고, 해당 기관들의 정보자산인 기록의 활용성 증대를 통해 성과창출에 도움을 주어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도 더욱 제고될 수 있다.

## 6. 결론

1999년 1월 29일에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공공기관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중간에 법률의 제목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 의지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중에서 국가기록원이 직접관리하는 기관들이 있다. 2007년, 2009년, 2012년에 서로 다른 기준

에 따라 지정되었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운영 상황의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공공기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을 통해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성과로 알려진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가지고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과 자체관리기관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은 공통적으로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과 자체관리기관 간의 경영평가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조사 대상기간 내에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는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가 더 우수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질적인 연구로써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인터뷰와 양적인 연구로써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의 분석을 통해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 제도의 확대를 위한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2007년, 2009년, 2012년에 각기 다르게 운영했던 지정 기준을 폐기하고 공공기관 근무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분류체계를 준용하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기관별 기록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연초에 직접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러한 단위는 국가의 각종 정책이나 계획 수립의 단위가 5년인 점을 감안하여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 기록관리 기관평가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하는 것이다.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정하면 직접관리기관의 숫자는 현재 40개 기관에서 2024년 기준 87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된다. 일정 규모의 공공기관들이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받게 되면 그동안 소홀했던 기록관리 업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시간이 누적되면 기록관리 수준도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또한,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한다면 평가 결과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될 것이다.

세 번째,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들이 기록경영시스템 표준(ISO 30301)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ISO 30301 표준은 기록을 단순한 관리의 영역에서 기관 경영의 영역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만든 경영시스템 표준이다. 기록을 기관의 핵심 자산으로 간주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시스템 중 하나로 만들어진 ISO 30301 표준은 기록경영시스템의 적용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제시한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전사적인 경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인증제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ISO 30301 표준에 관한 인증을 받고 그 체계에 맞도록 기관을 운영한다면 기록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내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과 자체관리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기록원 직접관리 여부에 따라 기관의 경영성과 수준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통해 분석하였고,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는 기관들의 경영성과가 더 좋다는 결과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의 분석대상 기간이 짧다는 점으로 인해 연구결과를 공공기관 전체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향후에 이루어질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유형분류 기준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이 서로 업무의 성격, 조직규모와 구조 등이 다르므로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인식 조사를 진행하는

등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성과와 기록관리 수준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3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00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09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40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87호.  
국가기록원 (2018). 2018년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2019). 정부산하공공기관 및 대학 기록물관리지침.  
국가기술표준원 (2020). 문헌정보 — 기록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KS X ISO 30301:2019).  
김영남 (2013).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서비스 분석 및 개선방안 :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김지현 (2013).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공기업의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3), 73-97.  
<http://doi.org/10.14699/KBIBLIA.2013.24.3.073>  
김혜정 (2017).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 보존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성재 (2017). 성과평가에 기반 한 기록관의 사회적 영향 분석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1), 73-92.  
<http://doi.org/10.14404/JKSARM.2017.17.1.073>  
박용기, 정연경 (2016). 공기업 기록경영 도입을 위한 구성 요소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2), 1-28.  
<http://doi.org/10.14404/JKSARM.2016.16.2.001>  
설문원, 김형국, 이원규 (2018).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록관리 조직 및 제도 혁신 방향. 기록학연구, 56, 5-48.  
<http://doi.org/10.20923/kjas.2018.56.005>  
이현영, 정연경 (20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투명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3), 97-114.  
<http://doi.org/10.14404/JKSARM.2017.17.3.097>  
임근혜 (2011). 국가기록원, 공공기관 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 기록인, 16, 14-19.  
정기애, 김유승 (2009).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와 경영품질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경영평가모델과 기록관리표준에 입각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 31-58. <http://doi.org/10.4275/KSLIS.2009.43.3.031>  
최동운, 최윤진 (2022). 공공기관 윤리경영의 기록관리 인식과 과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록관리 지표를 중심으로.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15, 157-198. <http://doi.org/10.23035/KAICS.2022.1.15.157>

###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ct No.20400.

Act on the Promotion of Creation of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Act No.17438.

Choi, Dong-woon & Choi, Yoon-jin (2022). Perceptions and Tasks of Record Management for Ethical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s - Focusing on the Record Management Index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 Institution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Information and Cultural Studies*, 15, 157-198.  
<https://doi.org/10.23035/KAICS.2022.1.15.157>
-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Presidential Decree No.34487.
- Enforcement Rule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No.340.
- Jeong, Ki-ae & Kim, You-seung (2009). A Study on the Between Record Management and Management Quality in Public Institutions: Based on the Malcolm Baldrige Model and ISO 15489.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31-58. <https://doi.org/10.4275/KSLIS.2009.43.3.031>
- Kim, Hye-jung (2017).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Records in Public Agencies under the Government and How to Improve Them. Master's Thesis, Daegu Catholic University, Korea.
- Kim, Ji-hyun (2013).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supervised by National Archives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3), 73-97.  
<https://doi.org/10.14699/KBIBLIA.2013.24.3.073>
- Kim, Young-nam (2013).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for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n Public Bodies: Focusing on National Archive of Korea's Direct Public Bodie.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20).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Management systems for records – Requirements (KS X ISO 30301:2019).
- Lee, Hyun-young & Chung, Yeon-kyung (2017). A Study o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s and Transparency in Public Organizat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7(3), 97-114.  
<https://doi.org/10.14404/JKSARM.2017.17.3.097>
- Lim, Geun-hye (2011). Support and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records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s. *Archive In*, 16, 14-19.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8). Record Management Guidelines for Public Institutions.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9). Record Management Guidelines for Public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 Park, Sung-jae (2017). A study on the social impact of archives based on performance evalu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7(1), 73-92. <https://doi.org/10.14404/JKSARM.2017.17.1.073>
- Park, Yong-gee & Chung, Yeon-kyung (2016). A study on the components for introducing records management in public enterpris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6(2), 1-28.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2.001>
-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ct No.20309.
- Seol, Mun-won, Kim, Hyeong-kuk, & Lee, Won-kyu (2018).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for Strengthening Expertise in Public Records Managemen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6, 5-48.  
<https://doi.org/10.20923/kjas.2018.56.005>